

■ 공장신설승인 신청서 작성 예시 ■

[별지 제5호 서식]

[] 시
 [] 중
 [] 이
 [] 업
 [] 변경
 [] 신청서
 [] 제
 [] 조
 [] 시
 [] 설
 [] 립
 [] 처
 [] 리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사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양쪽)

② 회사명 (주) 한 국 산 업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③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④ 000000-0000001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⑤ 00도 00시 00길 0 (00동 000-1번지)
 공장지 해당 여부: 해당 [] 미해당 []
 * 신청인은 첫번의 '창업자'인내를 보고 해당되는 곳에 사표를 합니다.

공장 소재지 ⑥ 00도 00시 00길 (00동 00-1번지)와 2필지(000-2 000-3)
 용도지역 ⑧ 관리지역 생산품 ⑨ 수출성형기계
 승인 신청 사항 ⑩ 근무, 화학생업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분류번호 ⑪ 29392
 공사 착공예정일 ⑫ 2007. 05. 06 공사 준공예정일 ⑬ 2007. 12. 03

구 모	⑭ 2007. 05. 06	공장 부지 면적(㎡)	⑮ 600	부대시설 면적(㎡)	⑯ 200	중업월 수	⑰ 21명(남:15, 여:6)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공정부지면적(㎡)	분류번호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변경승인 신청사항 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7조, 제8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주)한 국 산 업 대표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0000년 00월 00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설립등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합니다.
 *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및 승인조건: 별지 참조

시장·군수·구청장 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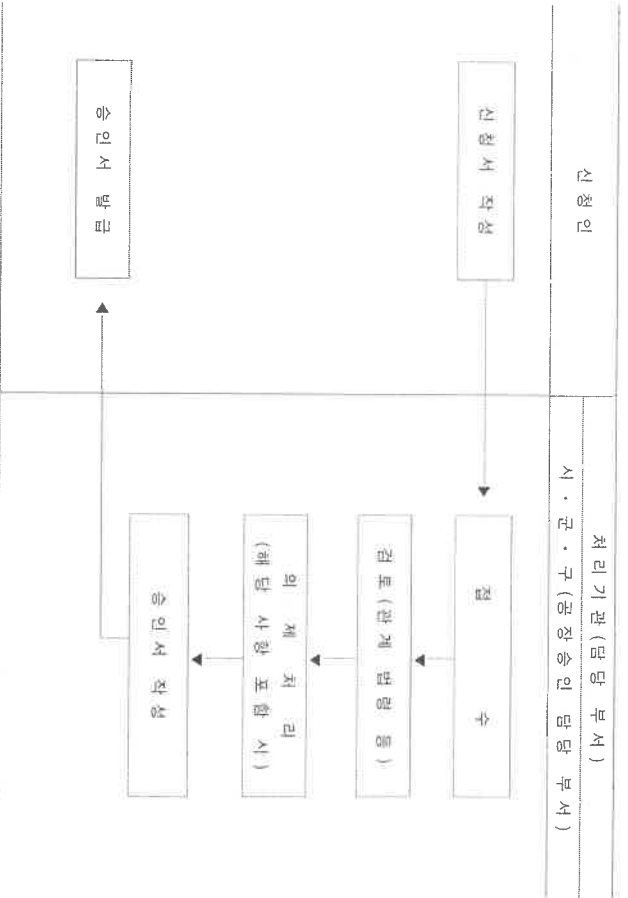
년 월 일

(뒤쪽)

첨부서류	1.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초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없음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토지 또는 건물(기초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등기사항증명서 1. 신청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자' 일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신청 인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활용 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계획의 내용에 해당되는 각종 부담금 면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 나. 창업자: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대상자

- ▶ 기존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 500㎡이하로 등록된 자가 공장건축면적은 500㎡이상으로 증설코자 하는 경우
- ▶ 공장을 신축하거나 기존 공장건축물을 이용하여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을 설립코자 하는 경우

작성요령

- ① "신설", "증설", "제조시설설치", "승인" 등의 단어 앞 사각형 중 "신설" 및 "승인" 단어 앞 사각형에 체크, 색칠 등으로 해당됨을 표시
- ② 사업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상호명을 기재
- ③ "사업자등록증" 맨 뒷줄에 있는 등록번호 기재
- ④ 사업자가 개인이면 생년월일을 사업자가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또는 조합이면 법인(조합)등록번호를 기재
- ⑤ 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며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재
- ⑥ 공장 및 사업장 설립 예정지의 모든 지번 기재(반드시 토지대장상 지번으로 기재)
- ⑦ 공장 및 사업장(예정지) 면적을 토지대장상 면적(㎡)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 (지번별 합산 면적)
- ⑧ 지적법상 공장용지, 전, 담, 임야, 대지 등 28종류 중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기재(토지대장상 지목종류 참조)
- 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조및동법제36조"에 의한 도시(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관리지역(보전, 생산, 계획),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선택하여 기재.
 - 용도지역이 2개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는 모두 기재
- ⑩ 사출성형기계 등 생산제품명이나 용역의 종류(봉제업, 레이저 절단기공 등) 기재
- ⑪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재. 통계청(<http://www.kostat.go.kr>) 홈페이지 참조
- ⑫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분류번호(5자리) 기재
- ⑬ 공장설립 공사 착공 예정일자 기재(건축법상 건축물 착공계 제출 예정일 기재)
 - 기존 건축물일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축물 착공일자를 기재
- ⑭ 공장설립 공사 준공 예정일자 기재(건축법상 사용승인 예정일 기재)
 - 기존 건축물일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축물 사용승인일자를 기재
- ⑮ 공장설립(예정지) 면적을 토지대장상 면적(㎡)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 (지번별 합산 면적)

- ⑯ 제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이 존재하는 건축물 (연)면적 및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 건축물대장 상 순수 작업장 면적과 옥외 공작물 면적의 합산
- ⑰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한 설치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면적
 - 건축물 대장상 작업장 면적을 제외한 창고, 사무실, 기숙사, 연구실, 식당 등의 합산 면적
- ⑱ 현재 및 예정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 ⑲ 수도권내에서 비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장이전승인" 신청 시에만 기재
- ⑳ 해당사항 없음

■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 ■

■ 산업진흥정책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16.2.15.>

(제1쪽)

사업계획서

20

회사명
대표자

직인

신청대상자

▶ “산업진흥정책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설립관련 인·허가 신청 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의무화된 경우(예, 산업단지입주계약, 공장설립신설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공장등록신청 등)

작성요령

- ① 공장설립 인허가 신청 일자에 맞춰 기재
 - 일반적으로 년, 월 단위까지만 기재
- ② 공장설립승인, 공장등록 등 공장설립관련 인·허가 신청업체 이름 기재
- ③ 공장설립승인, 공장등록 등 공장설립관련 인·허가 신청자 이름 기재
 - 법인의 경우는 대표이사 기재

1. 사업개요

명칭 (주) 한국 기업	주소 ① 00도 00시 00길 000동 000-1번지
회사전화번호 ② 000-000-0001	팩스번호 000-000-0001
홈페이지 주소 koreaeng.co.kr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1
성명 홍길동	이메일 주소 hkd@naver.com
주소 00시 00시 00길 000동 000-1번지	생년월일 000000-0000001
전화번호 000-000-0000	팩스번호 000-000-0001

업종(5단위) ③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29392)
 생산품명 ④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계
 주원자재 철판, 합분, 피이프, 모터 등

공장 주소 ⑤ 00도 00시 00길 0 (00동 000-1번지외 2필지)
 형태 ⑥ 분양() 경매() 양도() 양수() 임대()
 용도지역 ⑦ 계획관리지역 (수신지원보호구역, 개별진흥지구)

지목 ⑧ 전답
 사업등록번호 000-00-00000
 확공 예정일 2016. 1. 1
 준공 예정일 또는 준공일 2016. 12. 1
 사업 시작일 ⑨ 2016. 12. 10

공장 현황	총업원 수	국내	남	⑩ 20명
		여	5명	
공장의 규모	건축 면적	국외	남	2명
		여	1명	
공장의 규모	용지 면적	⑪ 2,000	m ²	
	건축 면적	⑫ 700	m ²	
	건축 면적/용지 면적	⑬ 300	m ²	
	기준공장 면적률	⑭ 1,000 m ² / 2,000 m ²		
	기준공장 면적률	⑮ 15	%	
투자 규모	외국인 투자금액	⑯ 30	%	
	외국인 투자비율	⑰ 50	%	
	계	⑱ 1,500	백만원	

공장규모	자가(√)	⑲ 공장설립 형태	신규건립 입주()	⑳ 공장 규모	대() 중() 소(√)
투자규모	타인지분	외국인 투자금액	600	백만원	
	외국인 투자비율		500	천분	
			33.4	%	

기재요령

1.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5단위)까지 적습니다.
2. 건축면적은 공장설립일부터 4년 이내의 건축계획안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 공장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분류에 따라 적습니다.

작성요령

▶ 1. 사업개요

- ① 신청업체 법인본점소재지 또는 사업장 주소 기재
- ② 신청업체 공장 및 사업장 전화번호 기재
- ③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및 분류번호 5자리 기재(통계청(http://www.kosstat.go.kr) 홈페이지 참조)
- ④ 절임배추김치, 사출성형기계, 금속레이저절단기공, 한식업 등 생산제품명을 기재
- ⑤ 공장 및 사업장 설립예정지내 모든 토지지번 기재 (반드시 토지대장상 지번으로 기재)
- ⑥ 공장의 취득 형태에 따라 해당 항목에 표시
- ⑦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관리지역 (보전, 생산, 계획),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선택하여 기재
 - 용도지역이 2개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는 모두 기재
 - 가급적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부상 해당되는 용도지역·구역·지구를 모두 기재
- ⑧ 지적법상(토지대장 참조) 공장용지, 전, 답, 임야, 대지 등 28종류 중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기재
- ⑨ 사업시작일은 공장설립완료 후 최초 가동개시(예정)일을 기재
- ⑩ 가급적 현재 및 예정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 ⑪ 공장 및 사업장 설립예정지 면적을 토지대장상 면적(m²)을 근거로 기재(지번별 합산 면적)
- ⑫ 제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이 존재하는 건축물 (연)면적 및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 건축물대장상 순수 작업장 면적과 옥외 공작물 면적의 합산
- ⑬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한 설치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면적
 - 상·기 제조시설면적을 제외한 창고, 사무실, 기숙사, 연구실, 식당 등의 합산 면적
- ⑭ 제조시설 면적과 부대시설면적을 합산한 면적 (건축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 ⑮ 제조업종별 공장용지면적에 대한 대통령이 정하는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 비율
 - 산업자원부 고시 「공장설립등의 업무처리 기준」 내용 중 "면적률" 참조
- ⑯ 건축법상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건물 1층바닥 면적)의 비율
 - 기존 건축물일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상 견폐율을 기재
 - 기존 건축물상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건물 각층 바닥면적)의 비율
 - 기존 건축물일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상 용적률을 기재

- ㉔ 금회 공장설립 시 소요되는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계·장치 구입비, 운전자금을 합산한 금액
- 아래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합산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 ㉕ 공장설립을 나대지에서 신규로 건설할 경우 "신규건립입주"란에 체크(√)하고 기존 공장건축물을 이용하여 공장설립 시에는 "기존건물입주"란에 체크(√)
- ㉖ 중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예정)수가 50인 미만이면 소기업, 50인 이상 300인 미만이면 중기업에 체크

2. 공장건설 계획

(단위 : m²)

구 분	현 제 ①	2007년 ②	2008년 ②	2009년 ②	2010년 ②	계 ③
④ 제조시설	400.00	100.00	200.00	-	-	⑩ 700.00
⑤ 부대시설	200.00	50.00	50.00	-	-	⑪ 300.00
⑥ 창 고	50.00	50.00	-	-	-	100.00
⑦ 식 당	50.00	-	-	-	-	50.00
⑧ 기숙사	50.00	-	-	-	-	50.00
⑨ 연구실	50.00	-	50.00	-	-	100.00
⑩ 계	600.00	150.00	250.00	-	-	⑬ 1,000.00

● 각 시설에 대한 건축면적은 연면적으로 기재할 것.

(단위: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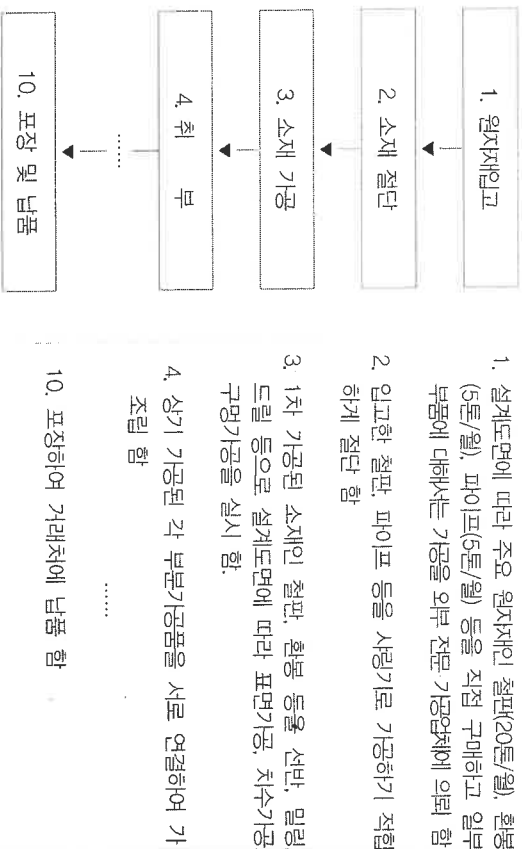
구분	2. 공장건설계획			계
	① 현재	② 2017년	③ 2018년	
④ 제조시설	400.00	100.00	200.00	⑩ 700.00
⑤ 부대시설	200.00	50.00	50.00	⑪ 300.00
⑥ 창고	50.00	50.00	-	100.00
⑦ 식당	50.00	-	-	50.00
⑧ 기숙사	50.00	-	-	50.00
⑨ 연구실	50.00	-	50.00	100.00
⑩ 계	600.00	150.00	250.00	⑬ 1,000.00

※ 작성요령 : 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면적은 연면적을 적용합니다.

3. 생산공정도 해설

생산공정도

생산공정 요약 설명



1. 설계도면에 따라 주요 원자재인 철판(20톤/월), 환봉(5톤/월), 파이프(5톤/월) 등을 직접 구매하고 일부 부품에 대해서는 가공을 외부 전문 가공업체에 의뢰 함

2. 입고한 철판, 파이프 등을 사림기로 가공하기 적합한 하ಗೆ 절단 함

3. 1차 가공된 소재인 철판, 환봉 등을 선반, 밀링, 드릴 등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표면가공, 치수가공, 구멍가공을 실시 함.

4. 상기 가공된 각 부분가공품을 서로 연결하여 가 조립 함

10. 포장하여 거래처에 납품 함

작성요령

▶ 2. 공장건설 계획

건축면적은 연면적 기준으로 기재하며 기공적 소수들째자리까지 기재
 공장건설면적 산정 시 공장건축물 연면적뿐만 아니라 저장조등 옥외 건축물의 수평 투영면적을 포함

① 이미 준공(건축물대장상 등재)된 공장 건축물 및 옥외 건축물이 있는 경우 당해 열(Column)란에 기재

② 향후 4년 안에 공장건축물 및 옥외 건축물을 새로이 설치코자 할 경우 당해 열(Column)란에 기재

③ 각 행별 ①열(Column)과 ②열(Column)내 면적을 합산하여 기재

④ 제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이 존재하는 건축물 (연)면적 및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 건축물대장상 소수 작업장 면적과 옥외 공작물 면적의 합산

⑤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한 설치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면적

- 상기 제조시설면적을 제외한 창고, 사무실, 기숙사, 연구실, 식당 등의 합산 면적

- 아래 ⑥행, ⑦행, ⑧행, ⑨행 면적의 합산과 일치

⑩ 각 열별 ④행(Row)과 ⑤행(Row)내 면적의 합산과 일치

⑪ 앞 장 "사업개요" 내용 중 ⑫번 제조시설면적 숫자와 일치

⑫ 앞 장 "사업개요" 내용 중 ⑬번 부대시설면적 숫자와 일치

⑬ 앞 장 "사업개요" 내용 중 ⑭번 건축면적 숫자와 일치

▶ 3. 생산공정도 해설

① 해당 열(Column)전체에는 공장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위주로 작업공정을 약 10단계 정도로 구분하여 각 공정단계별 이를 대표할 수 있는 공정명을 기재

② 좌측 생산공정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기재

- 생산공정 요약설명란에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

- 원부자재 종류 및 사용량 (가능한 연간 사용량으로) 기재

- 공정별 자체 가공 및 외주 가공 여부 기재 (외주가공에 대해서만 별도 표시)

- 생산공정 요약설명란에는 공정에 설치할(된) 기계 및 장비와 연계하여 기공형태를 상세히 기재

4. 생산시설 명세 (제4쪽)

① 시설명	② 용량	③ 수량	④ 비고
범용 선반	15HP	1	금속 절삭기공용
CNC 선반	70HP	1	"
레디얼 M/C	5HP	1	금속 구멍기공용
컴퓨터사	15HP	1	공기 세척용
천장 크레인	10톤	1	원저체 이송용
CO ₂ 용접기	500A	1	연결 조립용

5. 배출시설 명세

시설명 (HP·kW·m ³)	수량	배출오염물질		비고
		⑤ 종류	⑥ 배출량	
CNC 선반	70HP	1	소음	
컴퓨터사	15HP	1	소음	
프레스 (비유압식)	30HP	2	소음, 진동	대 기 (5)종 수 질 (5)종 소음·진동(유·무)
도장시설	7m ³ (내적) 5HP(동력)	1	대기	5톤/년

* 작성요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적습니다.

6. 용수·전력·연료의 사용계획

생활용수 (상수도·지하수)(상수도·지하수)	공업용수 (상수도·지하수)	⑨ 전력(kWh/일)		⑩ 연료		
		일반전력	자기발전	석유 (t/일)	가스 (m ³ /일)	기타 (톤/일)
0.5 (지하수)	2 (지하수)	100KW	-	10t/일	-	-

작성요령

▶ 4. 생산시설 명세

- ① "시설명" 해당 열(Column)에는 공장내 설치할(된) 기계 및 장비 목록을 기재
- 기금적 쉬운 한글명칭으로 기재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 ② "용량" 해당 열(Column)에는 좌측 각 시설에 대한 용량 (모터마력 수, 내경사이즈, 톤수, 임피어, 시간당 연료사용량 등)을 기재
- 전기를 사용하는 모터가 있는 기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모터마력(HP)을 기재
- 용접기 크레인등과 같이 모터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임피어, 톤수 등으로 용량을 기재
- 도장시설, 가열로, 냉동시설등과 같은 시설은 반드시 내경사이즈(m3)와 연료사용량(시간당)을 기재
- kW를 마력으로 환산할 때는 kWx(3분의 4)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 절삭

③ "수량" 해당 열(Column)에는 좌측 각 시설에 대한 수 또는 양을 기재

- ④ "비고" 해당 열(Column)에는 좌측 기계·장비별 설치목적 또는 사용용도 등을 기재 (선반, 밀링 등 일반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함)

▶ 5. 배출시설 명세

- ⑤ "배출오염물질 종류" 해당 열(Column)에는 좌측 각 시설에서 배출이 예상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기재
-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대기오염물질(먼지, SOX, NOX 등)중 해당되는 오염물질 종류를 기재
- ⑥ "배출오염물질 배출량" 해당 열(Column)에는 폐수발생량, 대기오염물질(먼지, SOX, NOX 합산) 발생량을 기재
⑦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33조제2항 및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규모별에 따라 1~5종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 소음·진동은 관련배출시설이 있는지 유·무에만 체크

▶ 6. 전력, 용수 등 사용계획

- ⑧ "용수" 해당 칸에는 공장내에서 사용되는(필요한) 모든 물의 양(공업용수 + 생활용수)을 기재
- 공업용수는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용수량을 기재하고 생활용수는 근로자 생활에 관련된 용수량을 기재
- ⑨ "전력" 해당칸에는 공장에서 필요한 전력량을 기재하고 한편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으면 "일반전력" 칸에 기재하고 그 외 공장내 자기발전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발전" 칸에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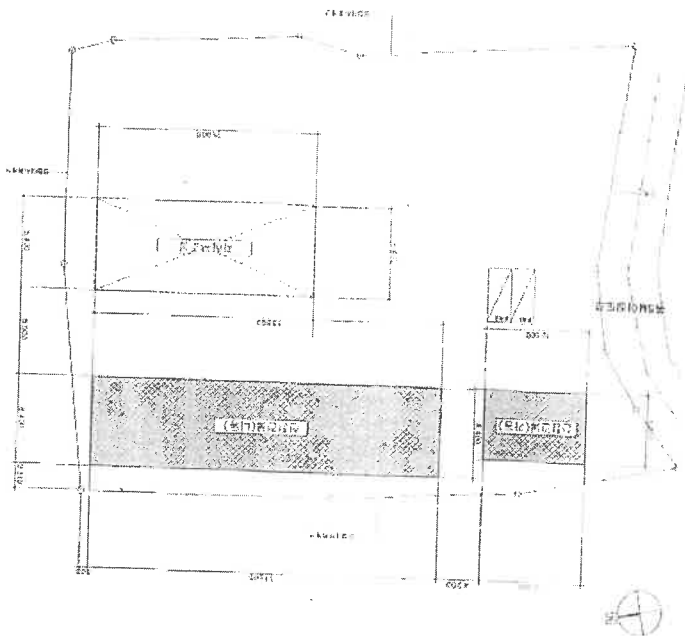
- 주로 전기요금저상 계약전력량의 기재
- 추정치인 안 될 시에는 공정내 모든 기계의 모터 마력 수 합계에다가 잉여전력량을 고려하여 산정

⑩ "연료" 해당 칸에는 공정에서 필요한 연료의 종류 및 양을 기재

7. 공장배치도

(제5쪽)

①



공정명		공정종류		공정위치	
1	기계공정	기계	기계	기계	기계
2	기계공정	기계	기계	기계	기계
3	기계공정	기계	기계	기계	기계
4	기계공정	기계	기계	기계	기계
5	기계공정	기계	기계	기계	기계
6	기계공정	기계	기계	기계	기계
7	기계공정	기계	기계	기계	기계
8	기계공정	기계	기계	기계	기계
9	기계공정	기계	기계	기계	기계
10	기계공정	기계	기계	기계	기계
11	기계공정	기계	기계	기계	기계
12	기계공정	기계	기계	기계	기계
13	기계공정	기계	기계	기계	기계
14	기계공정	기계	기계	기계	기계
15	기계공정	기계	기계	기계	기계
16	기계공정	기계	기계	기계	기계
17	기계공정	기계	기계	기계	기계
18	기계공정	기계	기계	기계	기계
19	기계공정	기계	기계	기계	기계
20	기계공정	기계	기계	기계	기계

※ 공정배치도 작성요령: 건축물의 용도 위주로 개략적으로 위치, 면적, 연도별 설치계획만을 표시합니다.